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9. 27 선고 2023가단8190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
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

담당변호사 이동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

담당변호사 황선하

변 론 종 결 2024. 7. 26.

판 결 선 고 2024. 9. 27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

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2. 8. 16. 접수 제596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의 아들로 원고의 외손자이다.

나. 원고는 2022. 8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2. 8. 16. 접수 제59613호로 2022. 8. 12.자 피고와의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인데,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피고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,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를 구한다. 즉, 이 사건 증여계약은 ‘피고가 원고의 손자로서 기본적 의무를 하며,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이 안녕한지 안부 연락을 드리고, 휴가 때 원고를 찾아뵙는 방법으로 부양할 것’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다.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원고 및 D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을 받지도 않는 등 피고의 부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, 피고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,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주장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정인섭

별지